



#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경북지사 -

2018. 11.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1. 감사 대상기관 : 경북지사

## 2. 감사 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8. 10. 29.~11. 02. (5일간) ※ 예비감사: 2018.10.22.~10.26.(5일간)

□ 인 원 : 감사부장 등 5명

## 3. 감사범위 : 2016. 2. 27. 이후 수행업무 전반

## 4. 감사중점

분야	주요 감사 착안사항	선정 근거(사유)
공통사항	무사안일, 복지부동 사례	'18년 감사운영 중점사항
	기술지도 사업의 성과, 효율성 등의 적정성	
	출장업무 수행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무사안일 기술지도 및 보고서 작성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이행 여부 및 복무관리 실태	
산업안전	화학공장 대형사고예방 기술지도의 적정성	'16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적시기술지도 실시 시기 및 보고서 발송 실태	유사·반복 지적사례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의 적정성	'16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상시모니터링 추출
재정지원	클린사업 적재대 품목별 보조금 한도 준수여부	'16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상시모니터링 추출
	클린사업장 투자완료 및 신용평가 확인의 적정성	
직업건강	적시기술지도 실시 시기 및 내용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건설안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서비스안전	위탁사업 수행실태 및 모니터링의 적정성	'16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유사·반복 지적사례
	위탁사업 실적 확인 및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상시모니터링 추출
	적시기술지도 사업 추진실태	'16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유사·반복 지적사례
교육· 안전문화	외부강의 시 복무처리의 적정성	'16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상시모니터링 추출
	산재예방요율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사내교육지원 업무의 적정성	상시모니터링 추출
경영지원	병가·연차·출장 등 복무관리 실태	유사·반복 지적사례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상시모니터링 추출
	계약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17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 1. 처분요구사항

### ○ 신분상조치: 경고 1건(1명), 주의 5건(6명)

- 산업안전분야 1건(경고 1명, 주의 1명), 직업건강분야 1건(1명), 건설안전분야 1건(1명), 서비스안전분야 1건(1명), 경영분야 1건(2명)

### ○ 행정상조치: 7건

- (개선)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순찰대상 선정 부적정 등 4건
- (통보) 외부강사 자격요건 확인 및 관리미흡 등 3건

### ○ 현지조치: 4건

-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절차 미흡 등 3건

### ○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시정	통보	모범	현지 조치
총건수	신분 인원	재정 금액	소계 (금액)	추징 (금액)	회수 (금액)							
16	7	-	-	-	-	1 (1명)	5 (6명)	4	-	3	-	4

※ 경고/주의 1건 중복

## 2. 처분요구 내역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관련자		지 적 내 용
			소속(부서)	직급.성명	
1	1-17-1	경고	경북지사 ○○부	○급 ○○○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경북지사 ○○부	○급 ○○○	
2	1-17-2	개선	○○실	○○실장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기술지원 추진절차 불합리
3	1-17-3	통보	○○본부	○○본부장	기관 대표 이메일 시스템 보안성 유지 미흡
4	1-17-4	통보	○○본부	○○본부장	클린 투자완료 요청에 대한 확인 지연
5	1-17-5	개선	○○실	○○실장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정산 이 후 보고 절차 부재
6	1-17-6	주의	경북지사 ○○부	○급 ○○○	건강관리수첩 발급 안내 미실시
7	1-17-7	주의	경북지사 ○○부	○급 ○○○	계획서 대상 사업장 확인결과 지적 사항 및 이행여부 확인 부적정
8	1-17-8	개선	○○실	○○실장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대상 선정 부적정
9	1-17-9	주의	경북지사 ○○부	○급 ○○○	서비스업 적시기술지도 확인기술 지도 미실시
10	1-17-10	통보	○○실	○○실장	외부강사 자격요건 확인 및 관리 미흡
11	1-17-11	주의	경북지사 ○○부	○급 ○○○	복수예비가격조서 미작성 등 계약 업무처리절차 미준수
			경북지사 ○○부	○급 ○○○	
12	1-17-12	개선	○○실	○○실장	자산관리번호 중 자산과목코드 현행화 필요
13	1-17-13	현지 조치	경북지사 ○○부	○○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발굴 및 안내.홍보 부적정
14	1-17-14	현지 조치	경북지사 ○○부 ○○부	○○부장 ○○부장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절차 미흡
15	1-17-15	현지 조치	경북지사 ○○부	○○부장	장기간 공사 중지 현장 등의 계획 서 승계 확인 미흡
16	1-17-16	현지 조치	경북지사 ○○부	○○부장	자산취득 절차 미준수



직위	성명	담 당 업 무
부장 (감사반장)	○○○	○ 감사반 업무 총괄
차장	○○○	○ 직업건강 분야 ○ 재정지원 분야
차장	○○○	○ 경영지원 분야 ○ 서비스안전 분야 ○ 감사계획·결과 보고서 작성
차장	○○○	○ 건설안전 분야 ○ 교육·안전문화 분야
차장대우	○○○	○ 산업안전 분야 ○ 재정지원 분야

[붙임]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경고 및 주의 요구

일련번호 1-17-01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경고) ○급 A(퇴사)  
 관련자(소속기관) (주의) ○급 B(경북지사 ○○부)  
 제목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내용

공단은 모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협력업체의 자생적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모기업 주도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100인 이상의 모기업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일선기관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아 3월 말까지 모기업에서 제출한 프로그램(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는 사업추진지침에서 [표1]에서와 같이 내·외부 위원 5~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도록 하고 있다.

【표1】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심사위원회 명칭	구성시기	구성인원	구성기준
프로그램 접수 심사위원회	3월	5~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연직</b> : 지역본부장(지사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대상업종 담당부서 부장</li> <li>• 내부 및 <b>외부*</b> 위원</li> </ul>
프로그램 평가 위원회	11월	5~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지사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대상업종 담당부서 부장 등 내부 및 <b>외부*</b> 위원</li> </ul>

\* 산업안전·보건공학 관련 교수, 산업의학전문, 지도사, 안전보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경북지사 ○○부에서는 ‘18년 3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를 위한 프로그램 접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아래의 [표2]와 같이 위촉직 위원은 구성하지 않고 서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표2】 '18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위원회
당연직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지사장, ○○부장, ○○부장, ○○부장,</li> <li>·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지청 근로개선팀장</li> </ul>
위촉직 (0명)	· 없음
실시일	· 실시일 : 2018.03.30.

심사표는 심사위원별로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확정하되 심사위원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평가결과(동수의 의견이 나온 경우는 그 중 상위결과)를 해당 항목의 최종결과로 채택하여야 하나,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보고(○○부-749, 2018.03.29.) 단계에서 관련자가 심사표와 회의록을 미리 작성하여 결재를 진행하였고,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시 계획 단계에서 작성된 심사표와 회의록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경북지사 ○○부에서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경북지사장)은

- ①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한 관련자(○급 A, 퇴사)에게 엄중 ‘경고’ 하시기 바라며,
- ②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부서장(○급 B)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주의)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신분상조치 나.경고, 다.주의, 동 지침 별표3 □기술사업(서비스업 포함) 분야 2.법정사업 외 ○내규,추진방침 및 지침 미준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개선요구

일련번호 1-17-02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  
 제목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원 추진절차 불합리  
 내용 용

공단은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PSM 비대상 사업장 및 누출·화재·폭발 사고가 다발하는 반응기 등 공정 설비 또는 유사 공정을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추진방침 및 절차는 [표1]과 같다.

【표1】 추진방침 및 절차

구분	내용
추진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기술지도 실시</li> <li>※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유해·위험물질을 PSM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중위험군) 우선 지원</li> <li>- 과거 누출·화재·폭발사고 발생 업종 또는 반응기 등 위험 설비·유사 공정 보유 사업장 DB 분석을 통해 확보된 사업장 기술지원</li> <li>- 화학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보건교육 실시</li> </ul>
추진절차	<pre>             graph LR             A[대상사업장 선정] --&gt; B[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B --&gt; C[1차 기술지원]             C --&gt; D{2차 기술지원}             D -- 개선 --&gt; E[종결]             D -- 미개선 --&gt; F[고용부 보고]             </pre>

경북지사 ○○부에서 2017년도 수행한 중소기업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원 사업의 목표물량은 50개소였으며, 대상사업장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2017.03.22. 14:00~16:00)을 실시 한 후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 소멸, 이전 등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짐에 따라 2017년 11월에 8개소를 대상사업장으로 추가 선정하여 기술지원 실시하였으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12월에 2차 확인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1차 기술지원시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제시 한 후 2차 확인기술지원시에는 이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 추진 방침과 절차를 감안하면, 1차 기술지원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인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18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의하면 2차 확인기술지원은 1차 기술 지원 후 도출된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하고 미개선 사업장을 지방고용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선 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사업주가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험요인의 개선 완료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원 사업의 1차 기술지원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 하고, 개선여부 확인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지원 시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후 2차 확인을 실시하고, 개선 완료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①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통보

일련번호 1-17-03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관련자(소속기관) ○○부장

제목 기관 대표 이메일 시스템 보안성 유지 미흡

내용

공단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전체 및 주요 위험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시 사업장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라 함)의 심사·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으며,

방지계획서를 전자파일로 제출 받아 접수하기 위한 기관별 대표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관 대표 이메일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3개월 마다 변경하도록 사업계획 추진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지사 종합감사일인 2018년 11월 현재 경북지사를 포함하여 전체 27개 일선 기관 중 10개 기관에서 2016년 10월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1] 기관 대표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하지 않은 기관

번호	일선기관명	사용자 I.D	비밀번호 (영문으로입력)	최초 비밀번호 부여일
1	ㄱ	kosha5	ㄱ5	2016.10.13
2	ㄴ	kosha7	ㄴ7	2016.10.13
3	ㄷ	kosha9	ㄷ7	2016.10.13
4	ㄹ	kosha11	ㄹ11	2016.10.13
5	ㅁ	kosha12	ㅁ12	2016.10.13
6	ㅂ	kosha16	ㅂ16	2016.10.13
7	ㅅ	kosha19	ㅅ19	2016.10.13
8	ㅇ	kosha21	ㅇ21	2016.10.13
9	ㅈ	kosha22	ㅈ22	2016.10.13
10	ㅊ	kosha25	ㅊ25	2016.10.13

**관계기관 의견** ○○본부에서는 “기관 대표 이메일의 비밀번호가 주기에 따라 철저히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본부)은

기관대표 이메일 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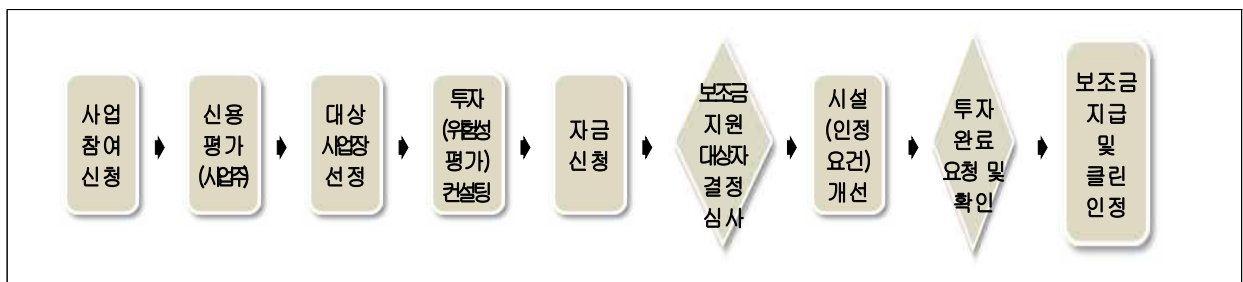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통 보

일 련 번 호 1-17-04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관련자(소속기관) ○○부장  
제 목 클린 투자완료 요청에 대한 확인 지연  
내 용

클린사업 업무처리절차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에서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투자완료확인을 요청할 경우 투자완료확인요청서를 접수한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 클린사업 업무처리 절차(제조·서비스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은 4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투자완료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에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접수신청한 사업장은 'ERP-클린사업장-투자완료 확인'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투자완료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접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39개소로 투자완료확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본부에서는 “클린 투자완료확인 요청에 대한 접수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본부)은

클린 투자완료확인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1-17-05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정산 이후 보고 절차 부재  
 내 용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지침』 제10조(건물임차 등 예산운용)에 따라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비의 정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 사업예산 집행통제를 매년 12월 20일 즈음에 마감함에 따라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비 정산은 매년 12월 15일 즈음까지 완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12월 인건비 등 일부 항목의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운영비 정산 이후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다.

2017년도 ○○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비 정산 이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반수용비 등의 항목에서 4,694,681원의 변동이 있었다.

**【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정산 이후 세부내역 변동 현황**

구분	지출(예정)금액			비고
	정산자료	실사용금액	차액	
계	402,839,840원	402,839,840원	0원	-
인건비	366,181,343원	370,476,024원	4,294,681원	인건비(8월) 오류, 소급지급
일반수용비	32,221,497원	27,526,816원	△ 4,694,681원	홍보물품 구매 취소
시설비	4,437,000원	4,837,000원	400,000원	조명 교체비용 증가

자료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정산자료 및 실집행자료 내용 재구성



그러나, ○○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정산 이후 예산집행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정산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공단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단에 보관되고 있는 운영비 정산자료 내용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집행자료 내용에서 예산항목별 금액차이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정산 이후 예산집행 변동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정산 이후 집행되는 예산에 대하여 변동사항 보고 및 실제 집행 여부 확인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일련번호 1-17-06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관련자(소속기관) ○급 A(경북지사 ○○부)  
제목 건강관리수첩 발급 안내 미실시  
내용

『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제8조(수첩발급 안내)에 따라 일선기관에서는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파악하여 그 현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매년 1회 이상 수첩 발급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사 ○○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강관리수첩 발급 안내를 미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3년간 기존 건강관리수첩 발급 사업장 ○○실트론(주)을 제외하고 신규발급 실적이 1건으로 저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경북지사장)은

건강관리수첩 발급 안내를 미실시한 관련자(○급 A)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신분상조치 다.주의, 동 지침 별표3 □기술사업(서비스업 포함) 분야 1.법정사업 ○사업지침, 업무지침 및 공단규칙 이상의 규정 미준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일련번호 1-17-07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관련자(소속기관) ○급 A(경북지사 ○○부)

제목 계획서 대상 사업장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이행여부  
확인 부적정

내용

공단은 높이 31미터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착공 전 안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심사와 시공 중 안전계획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심사가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확인)에 따라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확인결과 계획서 및 심사결과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그 사항을 설명하여 이행·개선토록 하고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되도록 개선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124조 ⑤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년~2018년도에 경북지사에서 수행한 확인검사 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실태를 검토한 결과,

○○기업(주)-공단ㄱ단지 주택재건축현장 확인 시 진행 중인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 중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요구사항’으로 추락방지망 설치를 요구하였고 ‘향후 주요 유해위험요인’으로 동일 사항(추락방지망 설치)을 중복 기술하였다.

그리고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 시 도괴 위험이 있는 경우 ‘개선요구사항’으로 가새 및 벽체지지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나,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향후 주요 유해위험요인’으로 기술하였다.

【표1】 지적사항 부적정 현황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확인일	확인자	지적사항 부적정
1	○○기업(주)	공단ㄱ단지 주택재건축 사업	2017-09-28	A	1. 개선요구사항과 향후 유해위험 요인을 중복 기술 2. 현재진행 중인 공종의 유해위험 요인을 향후 주요 유해위험요인 으로 기술

자료 : 확인결과통지서 및 개선결과 내용 재구성

또한 (주)○○건설-○○동 ○○아파트 신축현장 등 2개소에서 확인결과통지서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 중 개선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인결과에 대해 종결 처리하였다.

【표2】 개선이행 여부 확인 부적정 현황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확인일	확인자	미확인 항목
1	(주)○○건설	○○동 ○○ 아파트 건설공사	2017-04-04	A	파이프써포트 수평연결재 한 방향으로만 설치 등
2	(주)○○건설	○○시 ○○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2018-05-25	A	파이프써포트 수평연결재 설치 시 철선 이용

자료 : 확인결과통지서 및 개선결과 내용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경북지사에서는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경북지사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신분상조치 다. 주의, 동 지침 (별표3) □기술사업(서비스업 포함) 분야 1. 법정사업 ○기타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개선요구

일련번호 1-17-08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목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순찰대상 선정 부적정

내용

공단은 건설안전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상시 순찰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의하면, 안전보건지킴이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현장 중 비계설치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비계상 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의 올바른 설치상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사업장당 순찰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정율 90%이상인 현장, 시스템비계가 설치된 현장 및 비계 해체 현장은 반복 순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지사의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순찰대상 사업장(비계가 설치된 중·소규모현장)의 부족 및 발굴 어려움으로 인해 순찰 1,386회('18.10.24 기준) 중 한 사업장을 5회이상(5회~8회) 반복 순찰한 횟수는 88회이며(덧붙임 참조),

353개의 순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 사업장 당 순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건설-○○시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22개 사업장은 외부비계가 해체된 시점 등 순찰대상에서 제외된 시점에 순찰을 실시하였다.

【표1】 순찰대상에서 제외된 시점의 순찰 현황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기술 지원회차	기술지원일	지킴이1	지킴이2
1	XXXX	○○시 ○○동 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5	2018-07-02	A	B
2	XXXX	○○ 건물신축공사	5	2018-07-03	A	B
3	XXXX	○○생명 교육센터 신축사업 통신공사	2	2018-07-03	A	B
4	XXXX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4	2018-07-04	A	B
5	XXXX	○○건물신축공사	6	2018-07-19	A	B
6	XXXX	판매시설및제1종근린생 활시설신축공사	4	2018-07-20	A	B
7	XXXX	○○배수지 신설공사	4	2018-07-20	A	B
8	XXXX	○○댐 관광자원화 조성공사	3	2018-07-20	A	B
9	XXXX	병실 추가공사	3	2018-07-25	A	B
10	XXXX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3	2018-07-25	A	B
11	XXXX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3	2018-07-26	A	B
12	XXXX	판매시설및제1종근린생 활시설신축공사	5	2018-08-10	A	B
13	XXXX	○○배수지 신설공사	5	2018-08-13	A	B
14	XXXX	○○신축공사	5	2018-08-14	A	B
15	XXXX	○○지방경찰청 ○○의무경찰대 청사공사	4	2018-08-16	A	B
16	XXXX	○○면 ○○리 0 자동차관련시설신축공사	6	2018-09-11	C	D
17	XXXX	○○ 개인공사	7	2018-09-20	C	D
18	XXXX	○○ 개인공사	6	2018-09-20	C	D
19	XXXX	○○면 ○○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3	2018-10-04	C	D
20	XXXX	○○시티 신축공사	5	2018-10-10	D	-
21	XXXX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사	8	2018-10-23	D	-
22	XXXX	○○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사	8	2018-10-23	D	-

자료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실적 자료 재구성

또한, (주)○○전기-표고버섯톱밥재배지센터조성 전기공사 등 12개 사업장은

전기공사 등 사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찰을 실시하였다.

**【표2】 순찰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순찰 현황**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기술 지원회차	기술지원일	지킴이1	지킴이2
1	XXXX	표고버섯통배배지센터 조성사업전기공사	2	2018-07-05	A	B
2	XXXX	2018년 ○○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신축공사	2	2018-07-05	A	B
3	XXXX	○○유통사업단 산지유통센터 공사(건축)	2	2018-07-05	A	B
4	XXXX	2018년 ○○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신축공사	3	2018-07-16	A	B
5	XXXX	2018년 ○○농협 벼 건조저장시설(기계설비공사)	1	2018-07-16	A	B
6	XXXX	○○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총괄 및 1차)	4	2018-07-17	A	B
7	XXXX	○○국민센터 건립공사	3	2018-07-23	A	B
8	XXXX	○○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통신공사	2	2018-07-23	A	B
9	XXXX	○○아파트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2018-07-23	A	B
10	XXXX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전기공사	3	2018-07-23	A	B
11	XXXX	○○리-○○리 국도건설공사	2	2018-08-13	A	B
12	XXXX	○○도청 이전신도시 ○○ 신축공사	2	2018-08-14	A	B

자료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실적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실은 고위험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순찰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찰대상을 비계 설치 중·소규모 현장 외 일선기관 특성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 개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덧붙임) 고위험현장 안전보건지킴이의 한 사업장당 5회이상 반복 순찰 현황(88회)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기술 지원회차	기술지원일	지킴이1	지킴이2
1	XXXX	□□□□	5	2018-06-25	A	B
2	XXXX	□□□□	5	2018-07-02	A	B
3	XXXX	□□□□	5	2018-07-03	A	B
4	XXXX	□□□□	5	2018-07-03	A	B
5	XXXX	□□□□	5	2018-07-20	C	D
6	XXXX	□□□□	5	2018-07-24	C	D
7	XXXX	□□□□	5	2018-07-24	C	D
8	XXXX	□□□□	5	2018-07-24	C	D
9	XXXX	□□□□	5	2018-07-24	C	D
10	XXXX	□□□□	5	2018-07-25	C	D
11	XXXX	□□□□	5	2018-07-25	C	D
12	XXXX	□□□□	5	2018-07-25	C	D
13	XXXX	□□□□	5	2018-07-25	C	D
14	XXXX	□□□□	5	2018-08-02	C	D
15	XXXX	□□□□	5	2018-07-17	A	B
16	XXXX	□□□□	5	2018-07-17	A	B
17	XXXX	□□□□	5	2018-08-08	C	D
18	XXXX	□□□□	5	2018-07-18	A	B
19	XXXX	□□□□	5	2018-07-18	A	B
20	XXXX	□□□□	6	2018-07-19	A	B
21	XXXX	□□□□	5	2018-08-10	C	D
22	XXXX	□□□□	6	2018-07-20	A	B
23	XXXX	□□□□	6	2018-08-20	C	D
24	XXXX	□□□□	6	2018-08-20	C	D
25	XXXX	□□□□	6	2018-08-20	C	D
26	XXXX	□□□□	5	2018-08-20	C	D
27	XXXX	□□□□	6	2018-08-20	C	D
28	XXXX	□□□□	5	2018-08-22	C	D
29	XXXX	□□□□	5	2018-07-27	A	B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기술 지원회차	기술지원일	지킴이1	지킴이2
30	XXXX	□□□□	5	2018-07-27	A	B
31	XXXX	□□□□	6	2018-08-24	C	D
32	XXXX	□□□□	5	2018-08-24	C	D
33	XXXX	□□□□	6	2018-08-29	C	D
34	XXXX	□□□□	6	2018-08-29	C	D
35	XXXX	□□□□	5	2018-08-10	A	B
36	XXXX	□□□□	6	2018-08-29	C	D
37	XXXX	□□□□	6	2018-08-29	C	D
38	XXXX	□□□□	7	2018-08-13	A	B
39	XXXX	□□□□	5	2018-08-13	A	B
40	XXXX	□□□□	5	2018-08-13	A	B
41	XXXX	□□□□	5	2018-08-14	A	B
42	XXXX	□□□□	5	2018-08-14	A	B
43	XXXX	□□□□	5	2018-08-21	A	B
44	XXXX	□□□□	5	2018-09-05	C	D
45	XXXX	□□□□	6	2018-08-23	A	B
46	XXXX	□□□□	6	2018-08-23	A	B
47	XXXX	□□□□	6	2018-08-23	A	B
48	XXXX	□□□□	5	2018-08-23	A	B
49	XXXX	□□□□	5	2018-08-24	A	B
50	XXXX	□□□□	5	2018-09-07	C	D
51	XXXX	□□□□	7	2018-09-11	C	D
52	XXXX	□□□□	6	2018-09-11	C	D
53	XXXX	□□□□	7	2018-09-11	C	D
54	XXXX	□□□□	7	2018-09-11	C	D
55	XXXX	□□□□	6	2018-08-30	A	B
56	XXXX	□□□□	5	2018-08-30	A	B
57	XXXX	□□□□	6	2018-09-04	A	B
58	XXXX	□□□□	5	2018-09-05	A	B
59	XXXX	□□□□	7	2018-09-05	A	B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기술 지원회차	기술지원일	지킴이1	지킴이2
60	XXXX	□□□□	7	2018-09-11	C	D
61	XXXX	□□□□	5	2018-09-12	C	D
62	XXXX	□□□□	6	2018-09-14	C	D
63	XXXX	□□□□	5	2018-09-17	C	D
64	XXXX	□□□□	5	2018-09-10	A	B
65	XXXX	□□□□	6	2018-09-10	A	B
66	XXXX	□□□□	5	2018-09-20	C	D
67	XXXX	□□□□	7	2018-09-20	C	D
68	XXXX	□□□□	6	2018-09-20	C	D
69	XXXX	□□□□	6	2018-09-12	A	B
70	XXXX	□□□□	5	2018-09-28	C	D
71	XXXX	□□□□	5	2018-10-01	C	D
72	XXXX	□□□□	5	2018-10-01	C	D
73	XXXX	□□□□	5	2018-09-18	A	B
74	XXXX	□□□□	5	2018-09-21	A	B
75	XXXX	□□□□	5	2018-09-21	A	B
76	XXXX	□□□□	7	2018-09-21	A	B
77	XXXX	□□□□	7	2018-09-21	A	B
78	XXXX	□□□□	5	2018-10-01	A	B
79	XXXX	□□□□	7	2018-10-01	A	B
80	XXXX	□□□□	5	2018-10-04	C	D
81	XXXX	□□□□	5	2018-10-10	D	-
82	XXXX	□□□□	7	2018-10-10	D	-
83	XXXX	□□□□	5	2018-10-15	A	B
84	XXXX	□□□□	7	2018-10-15	A	B
85	XXXX	□□□□	8	2018-10-23	D	-
86	XXXX	□□□□	8	2018-10-23	D	-
87	XXXX	□□□□	8	2018-10-23	D	-
88	XXXX	□□□□	8	2018-10-23	D	-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주 의 요 구

일 련 번 호            1-17-09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관련자(소속기관)    ○급 A(퇴사)

제                    목            서비스업 적시기술지도 확인기술지도 미실시

내                    용

2017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서비스업 재해발생사업장 적시기술지도」 사업의 확인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① 적시기술지도(1차) 후 사고성 재해 재발 사업장, ② 예방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며, 사고성 재해가 재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시기술지도(1차) 후 재해가 재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해서 확인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나, 경북지사에서는 종합감사 대상기간인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2개의 사업장에서 1차 기술지도 후 사고성재해가 재발하였음에도 확인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1차 기술지도 이후 사고성 재해가 재발하였으나, 확인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사업장명	1차 기술지도 일자	재해재발일자	재발재해 요양승인일	담당자
XXXX	2017.04.28.	2017.08.25.	2017.10.16.	A
XXXX	2016.08.24.	2017.04.21.	2017.05.26.	A

**관계기관 의견**      경북지사에서는 “향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 수행시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경북지사장)은 확인기술지도를 누락한 사례가 다른 기술지원 사업 등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인 A에 대해서는 처분 생략**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신분상조치 다.주의, 동 지침 별표3 □기술사업(서비스업 포함) 분야 2.법정사업 외 ○내규,추진방침 및 지침 미준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통 보

일 련 번 호 1-17-10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외부강사 자격요건 확인 및 관리 미흡

내 용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조(강사)에 의하면 교육 시 외부강사를 선임·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사장이 위촉한 자 중에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은 교육시행기관의 장이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강사정보를 주관부서에서 검토·승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10조(강사료 지급)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강사료 및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표】 강사료 및 여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강사료 지급금액 (시간당)	비고
1호	차관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등	200,000원	
2호	4급 이상 공무원 등	150,000원	
3호	5급 공무원 등	120,000원	
4호	1호·2호·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00,000원	

자료 : 안전보건교육규칙 별표2 강사료 및 여비 지급기준 재구성

따라서 공단은 외부강사를 등록·관리하는 경우 자격증 등 강사 자격요건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강사 자격요건에 따라 강사료가 정확히 차등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교육포털의 외부강사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168명의 외부강사 중 78명은 자격증 등을 미첨부하는 등 자격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덧붙임 참조)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외부강사 자격증 첨부 등 외부강사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이용하여 외부강사를 관리하는 경우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외부강사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덧붙임)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이용한 외부강사 관리 시 자격증 등 미첨부 현황(78명)

연번	일선기관	소속	직책	성명	지급기준	비고
1	○○지사	XXXX	-	오**	1호	
2	○○지사	XXXX	과장	구**	4호	
3	○○지사	XXXX	과장	김*	4호	
4	○○지사	XXXX	-	임**	2호	
5	○○지사	-	-	오**	2호	
6	○○지사	XXXX	교수	양**	2호	
7	○○지사	XXXX	-	복*	2호	
8	○○지사	XXXX	국장	김**	4호	
9	○○지사	XXXX	대리	이**	4호	
10	○○지사	XXXX	실장	강**	4호	
11	○○지사	XXXX	원장	이**	2호	
12	○○지사	XXXX	직원	이**	4호	
13	○○지사	XXXX	-	손**	4호	
14	○○지사	XXXX	-	정**	3호	
15	○○지사	XXXX	팀장	이**	4호	
16	○○지사	XXXX	팀장	박**	4호	
17	○○본부	-	비상임이사	오**	2호	
18	○○지사	-	-	장**	2호	
19	○○지사	XXXX	-	이**	4호	
20	○○지사	XXXX	교수	김**	2호	
21	○○지사	XXXX	-	이**	4호	
22	○○본부	XXXX	-	이**	3호	
23	○○본부	XXXX	-	신**	4호	
24	○○본부	XXXX	-	양**	2호	
25	○○본부	XXXX	국장	조**	4호	
26	○○본부	XXXX	대리	강**	4호	
27	○○본부	XXXX	-	은**	4호	
28	○○본부	XXXX	과장	류**	4호	
29	○○본부	XXXX	교수	김**	2호	
30	○○본부	XXXX	부장	김**	4호	
31	○○본부	XXXX	기술이사	강**	2호	
32	○○본부	XXXX	원장	가**	2호	
33	○○본부	XXXX	과장	염**	4호	
34	○○본부	-	교수	박**	1호	
35	○○본부	-	부장	원**	4호	
36	○○본부	-	소장	박**	2호	
37	○○본부	XXXX	팀장	반**	2호	
38	○○본부	XXXX	팀장	김**	4호	
39	○○본부	XXXX	교수	김**	2호	



연번	일선기관	소속	직책	성명	지급기준	비고
40	○○본부	XXXX	직원	허**	4호	
41	○○본부	XXXX	-	양**	3호	
42	○○본부	XXXX	교수	오**	2호	
43	○○본부	XXXX	팀장	이**	4호	
44	○○본부	-	-	신**	4호	
45	○○본부	XXXX	-	정**	4호	
46	○○지사	XXXX	감사	장**	2호	
47	○○지사	-	-	함**	2호	
48	○○지사	XXXX	-	하**	2호	
49	○○지사	XXXX	조교수	이**	3호	
50	○○본부	XXXX	-	이**	2호	
51	○○본부	XXXX	-	문**	4호	
52	○○본부	XXXX	-	김**	2호	
53	○○본부	XXXX	교수	권**	2호	
54	○○본부	XXXX	교수	이**	2호	
55	○○본부	XXXX	-	한**	4호	
56	○○본부	XXXX	-	정**	2호	
57	○○본부	XXXX	주임	김**	4호	
58	○○본부	XXXX	-	여**	4호	
59	○○본부	XXXX	-	구**	4호	
60	○○본부	XXXX	-	한**	4호	
61	○○본부	XXXX	-	신**	2호	
62	○○본부	XXXX	--	윤**	4호	
63	○○본부	XXXX	팀장	이**	2호	
64	○○본부	XXXX		김**	2호	
65	○○본부	XXXX	본부장	팽**	4호	
66	○○본부	XXXX	대리	고**	4호	
67	○○본부	-	-	김**	4호	
68	○○지사	XXXX	교수	안**	2호	
69	○○지사	XXXX	교수	송**	2호	
70	○○지사	XXXX	계약직	김**	4호	
71	○○지사	XXXX	담당	채**	4호	
72	○○지사	XXXX	부장	박**	4호	
73	○○지사	XXXX	소장	이**	2호	
74	○○본부	XXXX	-	이**	4호	
75	○○본부	XXXX	교수	양**	2호	
76	○○지사	-	-	홍**	2호	
77	○○지사	XXXX	차장	김**	4호	
78	○○지사	XXXX	교수	황**	2호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일련번호 1-17-11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관련자(소속기관) ○급 A(경북지사 ○○부)  
○급 B(경북지사 ○○부)

제목 복수예비가격조서 미작성 등 계약업무처리절차 미준수

내용

「계약사무규칙」 제22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지참)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중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에 대하여는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조서 또는 예정가격조서를 해당 입찰 직전에 입찰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지정된 개찰 장소에 지참, 개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의  $\pm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복수예비가격조사 서식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보관해야 하고,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지사에서는 종합감사대상기간인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진행한 계약 등의 업무 중 2017년 청사관리용역계약(○○부-554(2017.02.27. 「2017년도 청사관리용역 계약 추진 계획보고」, 제한경쟁입찰) 업무를 진행하면서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계약사무규칙」 제54조(견적에 따른 가격 결정 등) 제7항에서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자산을 제외한,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지사에서는 직원 숙소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추정가격이 100만 원 이상임에도 구매요구가 아닌 지급요청으로 처리하였다.

**【표】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용역 부적정 현황**

순번	지급요청번호	용역명	계약금액	지출일자	거래처
1	00000000000000	직원숙소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1,210,000	2018/05/3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익스프레스
2	00000000000000	직원숙소 이전 비용(2건)	1,364,000	2018/08/1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익스프레스

**관계기관 의견** 경북지사에서는 “향후에는 입찰 등 물품, 용역 등의 업무 추진 시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처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경북지사장)은

입찰 등 물품, 용역 등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미준수한 관련자(○급 B)와 부서장(○급 A)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 신분상 조치 다. 주의, [별표3]  서무·재무·인사·정보화 분야 2. 재무 관련 업무, 기타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개선요구

일련번호 1-17-12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목 자산관리번호 중 자산과목코드 현행화 필요  
내용

「자산관리규정시행규칙」 제7조(자산관리번호 부여 및 자산인식표 부착)에서는 비유동자산과 부외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자산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관리번호는 ‘취득연도-자산과목코드-일련번호’ 순으로 12자리로 부여하되, 자산과목코드는 [별표 2]에 따라 01번(유형자산토지) ~ 39번(사용수익기부자산조경)까지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경북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25개, 공단 전체 자산 중 3,208개의 전산관련 기기 등의 자산이 2013년부터 자산과목코드에 없는 40번으로 임의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자산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정보화 기기 등의 자산 관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자산관리규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전산기기 등의 자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나. 개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7-13	받 음	소 속	직 · 성명
			경북지사	○○부장
<p><b>1. 제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발굴 및 안내·홍보 부적정</b></p>				
<p><b>2. 내용</b></p> <p>사업계획추진지침에서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 라 함) 제출대상 사업장 발굴을 위하여 일선기관에서 사전 안내·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수행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공장설립 등 인·허가 시 민원인에게 방지계획서 제도를 안내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 발송(년 1회)</li> <li>- 지자체 협의 시(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제출대상 및 미제출 추정 사업장에 계획서 제출 안내</li> </ul> <p style="margin-left: 40px;">※ 지자체 협의 결과는 DB로 관리하고, 대상 및 판단보류 사업장은 추적관리 실시</p> <p>지자체 협의결과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로 안내하는 등 사업장에서 방지계획서 제출 시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지자체 협의결과 실적은 본부 ○○본부로 제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p> <p>하지만, 경북지사 종합감사일인 2018년 11월 현재까지 지자체의 협의 요청 결과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안내한 사업장 중 추적관리를 미실시하여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이 44개소로 확인되었으며,</p>				
<p><b>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b></p>				

이 중 「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 등 12개소는 협의일이 1년 이상 경과 되었음에도 'ERP-개별사업장정보' 상의 사업장상태가 '정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제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표1]

[표1]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여부 현장확인 필요 사업장 명단

번호	사업장명(또는 건축주)	사업지등록번호	협의(접수)일	협의(처리)일	대상/비대상/판단보류
1	XXXX	0000000000	2014-06-02	2014-06-02	대상
2	XXXX	0000000000	2014-10-15	2014-10-20	대상
3	XXXX	0000000000	2015-07-07	2015-07-10	대상
4	XXXX	0000000000	2015-09-01	2015-09-11	판단보류
5	XXXX	0000000000	2015-09-21	2015-09-21	판단보류
6	XXXX	0000000000	2015-12-30	2015-12-30	대상
7	XXXX	0000000000	2016-01-05	2016-01-05	판단보류
8	XXXX	0000000000	2016-02-23	2016-02-24	판단보류
9	XXXX	0000000000	2016-03-04	2016-03-04	대상
10	XXXX	0000000000	2016-09-08	2016-09-08	대상
11	XXXX	0000000000	2016-11-21	2016-11-25	대상
12	XXXX	0000000000	2017-01-02	2017-01-02	대상

### 3. 조치할 사항

경북지사장(○○부장)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안내한 12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방지계획서 제출여부를 판단하고 해당사업장이 대상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방지계획서 제출 안내 및 고용노동부로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4.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5-14	받 음	소 속	직 · 성명
			경북지사	○○부장 ○○부장

1. 제목 :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 절차 미흡

## 2. 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제20조 및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10조(인정의 취소)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2017년도 경북지사에서는 ○○ 등 6개소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인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 【표】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 시 소명기회 미부여 사업장 현황

연번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인정취소일	취소사유	담당자
1	00000000000	XXXX	2016-12-28	사후심사시 인정기준 미충족	***
2	00000000000	XXXX	2016-12-28		***
3	00000000000	XXXX	2017-12-21		***
4	00000000000	XXXX	2017-11-02	사업장 자진 취소	-
5	00000000000	XXXX	2017-12-21	사후심사시 인정기준 미충족	***
6	00000000000	XXXX	2017-12-21		

자료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입력내용 재구성

## 3. 조치할 사항

경북지사장(○○부장, ○○부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장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4. 현지조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7-15	받 음	소 속  경북지사	직 · 성명  ○○부장
----------	---------	-----	-----------------	--------------------

**1. 제목 : 장기간 공사 중지 현장 등의 계획서 승계 확인 미흡**

**2. 내용**

공단은 높이 31미터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착공 전 안전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심사와 시공 중 안전계획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 지침」 제5조(부도·공사포기 및 장기간 공사 중지 현장 등의 계획서 승계 및 관리)에 의하면 계획서 심사를 받고 공사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못하게 된 기존 업체의 계획서를 후속 건설업체가 승계한 경우 공단은 기존의 계획서를 재심사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후속 건설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고,

계획서 승계 확인 시 계획서와 그 간의 심사·확인결과의 인계·인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계획서 및 심사·확인결과를 인계·인수하지 못한 경우 후속 건설업체는 잔여 공사에 대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북지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계 사업장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계획서 및 심사·확인 결과의 인수·인계를 확인하여 후속 건설업체가

계획서 및 심사·확인 결과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나, ○○건설-○○시 ○○동 ○○빌딩 신축공사 등 4개 사업장은 계획서 외 심사·확인결과의 인수·인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처리하였다.

### 3.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장(○○부장)은

업무수행 직원들에게 계획서 승계 확인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4.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7-16	받 음	소 속	직 · 성명
			경북지사	○○부장

**1. 제목 : 자산취득절차 미준수**

---

**2. 내용**

「계약사무규칙」 제54조(견적에 따른 가격결정 등)에서는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나,

자산은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취득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구매를 요청해야 하고, 견적서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구매에 의하여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사에서는 2017년 9월 1일 와이어제본기 자산(480천 원)을 취득하면서 구매요구가 아닌 지급요청으로 취득하였다.

**3. 조치할 사항**

경북지사장(○○부장)은 「계약사무규칙」 등의 내규에서 정하는 자산의 취득업무 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4.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